

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3.

발의자 : 전용기 · 박지원 · 임광현  
송옥주 · 민형배 · 임호선  
이소영 · 이용선 · 윤종균  
박상혁 · 박정 · 진성준  
서영교 · 정태호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.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,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(안 제328 조제1항 삭제).



##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8조제1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328條(親族間의 犯行과 告訴)</p> <p>① <u>直系血族, 配偶者, 동거친족,</u>  <u>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</u>  <u>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</u>  <u>한다.</u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第328條(親族間의 犯行과 告訴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